

「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
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9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갖춘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신기술의 사업화 및 기업 당면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임.
-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형 소·부·장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가

요구되는 바,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1) 사 무 명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

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가) 추진근거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8조, 제9조

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) 필요성 : 기술혁신 기업 선정, 사업 관리, 컨설팅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각종 기업지원사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

3)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업무 전반

가) 사업세부계획 수립,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, 대상기업 선정

나) 선정평가, 기업 간담회 실시, 지원금 지급 등 사업추진 전반

다) 기업 만족도 및 사업성과 조사, 후속 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

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5) 위탁기간 : 2026. 2. ~ 12.

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9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| 인건비 | 간접비 | 사업비 | 비고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900 | 180 | 90 | 630 | |

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.12.26)

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9) 부서의견 :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동의안은

-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면과제 해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과 기업 맞춤형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수행 실적을 보유한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관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투명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, 성과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해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